

2021년도 제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2. 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1-13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19건(안건번호 제2021-13677호~14155호).
 - 회의결과: 제2021-13677호~13682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제2021-13683호~13684호는 영화의 일부 장면을 캡처 이용하여 소개 및 감상을 작성한 사안으로, 인용 및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데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81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 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81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1-13677호~1415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1-13677호~1368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를 각각 50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6개의 게시물임.

(제2021-1367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67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67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68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68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68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총 1권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3677호~1368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해당 저작물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출판물임. 심의대

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A,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677호~136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3683호~13684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그에서 영화 '●●●●', '▲▲▲▲'의 일부 스크린샷을 이용하여 영화 소개를 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임.

(제2021-13683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영화 '●●●●'의 일부 스크린샷을 이용하여 영화 소개를 하는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음.

(제2021-13684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영화 '▲▲▲▲'의 일부 스크린샷을 이용하여 영화 소개를 하는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저작물 이용이 인용,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각 16장씩의 캡처 화면 및 포스터, 배우

사진 등을 이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였음. 게시물의 내용은 영화 내용의 소개와 개인적인 감상, 관련 정보 등임. 비평에 이르지 않더라도 영화 소개·감상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영화 분량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이용이 영화의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블로그 하단에 파워링크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나,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하여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해당 안전에 대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 B 위원: ☁☁☁ 블로그에서 영화 '●●●●'의 리뷰는 작성자가 쓴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영화 스토리와 함께 배우 사진과 포스터 등도 소개하고 있음.
- A 위원: '카테고리' 목록을 보여주시기 바람.
- D 위원: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나름대로 창작을 하는 것으로도 보임.
- B 위원: 영화 '▲▲▲▲' 게시글도 동일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한줄평, 스포일러 없는 줄거리, 감상, 관련 정보 등 동일한 형식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였음.

- D 위원: 영화 화면을 캡처한 것이 문제인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영화 화면을 캡처한 사실에 대하여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건임.
- D 위원: ○○○○ 영화 화면이 캡처가 잘 안됨. TV 화면에서 카메라로 찍은 것일 수도 있어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공개된 스크린샷을 가져온 것일 수도 있음.
- A 위원: 이 블로그의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공개는 안 되어 있음. 비공개로 설정할 수도 있음.
- D 위원: 광고는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블로그 하단에 파워링크 광고가 게재되어 있으나, 불법복제물 게시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3683호~1368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1-13683호~13684호는 영화의 일부 장면을 캡처 이용하여 소개 및 감상을 작성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합법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 데 이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683호~13684호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3685호~1415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만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인간수업'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3921호는 웹하드에서 방송 '인간수업'을 506포인트에 판매 중임. 넷플릭스에서 2020. 4. 29.에 공개한 드라마임. 돈을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임. (영화 '맹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400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맹크'를 무료로 제공 중임. 2020. 12. 4.에 개봉한 미국 영화임. 전체분량 2시간 12분을 제공하고 있음. 냉소적이고 신랄한 사회 비평가이자 알코올 중독자인 시나리오 작가 허먼 J. 멩키위츠가 훗날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 '시민 케인'의 시나리오

를 집필하는 과정을 통해 1930년대의 할리우드를 재조명하는 영화임.
(방송 '철인왕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4101호는 2020. 12. 12. 'tvN'에서 공개한 '철인왕후'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52포인트에 판매 중임. 중국 웹드라마 '태자비승직기' 원작으로,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 대표 허세남 영혼이 깃들어 '저 세상 텐션'을 갖게 된 중전 김소용과 두 얼굴의 임금 철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혼 가출 스캔들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3685호~1415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1-13685호~1415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685호~1415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3683호~13684호는 시정권고 부결하고, 제2021-13683호~13684호를 제외한 제2021-13677호~1415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2. 15.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